

취업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4월 1일

경기연구원 원 장 이



취업규칙 일부 개정규칙

1. 개정 이유

- 경기연구원노동조합과 협의·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(개정·시행일 2019.12.17.)하여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변경신고(신고일 2019.12.17.) 하였으나,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2019.12.19.에 ①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, ②임금산정기간 명시, ③ 직장내괴롭힘 예방규정 명시 등에 대한 이유로 취업규칙 추가 보완요청
-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의 추가 보완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개정 주요 내용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」 제18조의2(배우자출산휴가)개정(시행일 2019.10.1.)에 따라 특별휴가 중 ‘배우자출산휴가 일수 10일’로 변경(취업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[별표1])
-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에 의거 취업규칙 의무명시 사항인 임금산정기간을 ‘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’로 구체적 명시(취업규칙 제51조)
-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에 의거 취업규칙 의무명시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‘1년에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’ 등 예방조치의무 명확화(취업규칙 제57조)

3. 개정규정(안) : 덧 붙 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덧 붙 임

취업규칙 일부 개정규칙

경기연구원 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1항 관련 [별표1] [특별휴가 일수표]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특별휴가 일수표

구 분	대 상	일 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출산	배우자	10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- 비고 : 1.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2.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.

제5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인사복무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, 인사복무규정 4조의 2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5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③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,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부 칙 (2020. 4. 1.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1조 (지급일) ①인사복무규정 제 4조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, 인사복무규정 4조의 2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②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	제51조 (지급일) ①<u>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</u> 인사복무규정 제 4조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, 인사복무규정 4조의 2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②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제57조 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① ‘직장 내 괴롭힘’이란 임·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③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<u>정기적 예방교육 및 상시적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.</u>	제57조 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① ‘직장 내 괴롭힘’이란 임·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③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<u>정기적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,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</u>

[별표 1]

특 별 휴 가 일 수 표 (현행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출산	배우자	<u>5</u>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- 비고 : 1.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 2.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.

[별표 1]

특 별 휴 가 일 수 표 (개정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출산	배우자	<u>10</u>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- 비고 : 1.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 2.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.